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제 회)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74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 소속기관인 국립서울현충원 조직과 그 정원 7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9명, 7급 14명, 8급 9명, 9급 29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는 한편,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국방부, 국가보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립대전현충원”을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대전현충원”을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립대전현충원에 원장”을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원장 각”으로, “고위공무원단”을 “각각 고위공무원단”으로 한다.

제18조 중 “국립대전현충원·국립영천호국원·국립임실호국원·국립이천호국원”을 “국립서울현충원·국립대전현충원·국립영천호국원·국립임실호국원·국립이천호국원”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을 “국가보훈부”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094”을 “1,166”로 하고, 일반직 계 “1,094”을 “1,166”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7”을 “8”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066”을 “1,135”로 하며, 전문경력관 “16”을 “18”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 사무의 이관에 따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국방부 소속 공무원 7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9명, 7급 14명, 8급 9명, 9급 29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가보훈부로 이체한다.

[별표 4]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4조제1항 관련)

조직	정원
1) 보훈정책실	1명
2) 보훈정책실 3개 과	13명
3) 보상정책국 1개 과	5명
4) 복지증진국 1개 정책관등	1명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소속기관) ① 국가보훈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립묘지관리소로서 <u>국립대전현충원</u> ,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및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를 둔다.	제2조(소속기관) ① ----- ----- ----- ----- ----- <u>국립서울현충원</u> , <u>국립대전현충원</u> -----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직무) <u>국립대전현충원</u> ,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및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16조(직무) <u>국립서울현충원</u> , <u>국립대전현충원</u> ----- -----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장) ① 국립묘지관리소 중 <u>국립대전현충원</u> 에 <u>원장</u> 1명을 두고, 원장은 <u>고위공무원단</u>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밖의 국립묘지관리소에 소장 또는 원장 각 1명을 두고,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및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의 소장은 각각 5급으로,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및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의 소장은 각각 4급으로, 국립영천호국원·국립임실호국원·국립이천호국원·국립산청호국원·국립괴산호국원 및 국립제주호국원의 원장은 각각 4급으로 보한다.	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장) ① ----- <u>국립서울현충원</u> 및 <u>국립대전현충원</u> 에 <u>원장</u> 각 ----- -- <u>각각 고위공무원단</u> ----- ----- -----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u>국립대전현충원</u> · <u>국립영천호국원</u> · <u>국립임실호국원</u> · <u>국립이천호국원</u> 및 <u>국립산청호국원</u> 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	제18조(하부조직) ----- ----- ----- -- <u>국립서울현충원</u> · <u>국립대전현충원</u> · <u>국립영천호국원</u> · <u>국립임실호국원</u> · <u>국립이천호국원</u> - -----

관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	-----
부령으로 정한다.	-----.
제34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	제34조(평가대상 조직) ① -----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
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u>국가</u>	----- <u>국가</u>
<u>보훈부와 그 소속기관</u> 에 두는	<u>보훈부</u> -----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	-----
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94</u>	<u>1,166</u>	+72
일반직 계	<u>1,094</u>	<u>1,166</u>	+72
고위공무원단	<u>7</u>	<u>8</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066</u>	<u>1,135</u>	+69
전문경력관	<u>16</u>	<u>18</u>	+2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8